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개정토록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지난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7년 봄까지 한국의 노동법을 바꿔 보도록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부터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 출가차제 노동관계법 개정요구가 커 부득이 노동관계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주요내용

Q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1. 개정배경 국제노동기구(ILO)는 1993년 이후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춰

구분	현행	내년 시행안
기업단위 복수노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시행되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사용자 처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장에 피업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중재가 내려지면 15일간 정지행위 금지)	2008년 1월 1일부터 직권중재제도 폐지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병원·전기·수도·가스·철도·석유·한국은행 등	할연 공급과 항공 부문 추가 ·외부 인력을 채용해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함 (피업 참가 인원의 50% 이내 인력으로 한정) ·노조는 피업 시 필수업우는 반드시 수행토록 의무화
파업시 대체근로	사업장 내 인력을 이용한 대체근로만 허용	근로자가 원할 경우 원직 복직 대신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사면으로 명시해야 함 ·해고사유도 반드시 사면으로 작성해야 함 ·사전통보 기간을 60일로 축소 ·3년 이내에 해고자가 일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에 사람을 채용할 경우 해고자를 우선 채용해야 함
부당해고에 대한 처리	노동위원회와 해고자에 대해 구제명령을 내리면 원직에 복직 보상받을 수 있음	·근로조건 중 임금을 사면으로 명시 ·해고사유에 대한 사면 명시제도 없음
근로조건 및 해고사유 처리방식	·근로자 대표에 60일전에 통보하고 협의 ·사용자는 해고한 근로자를 재고용토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문의 : 한국중립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 877-7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이웃집에 사는 甲이 제 소유 농지 약 200평을 자기에게 팔지 않으면 저의 외동아들들을 차로 상해하겠다고 협박하므로, 저는 위 농지를 평당 8만원에 매도하여 등기까지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 농지의 시세는 평당 10만 원정도에 거래되었으므로 저는 평당 2만 원씩 손해를 보았음은 물론 이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A 민법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가 甲의 협박 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졌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위 농지를 매도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10조). 관례도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귀하

의 경우를 살펴보면 甲의 강박행위가 있었고, 또한 그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귀하가 甲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위 농지를 매도하게 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즉, 甲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느낀 공포심에 관하여 그러한 공포심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인도 그 매도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인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귀하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나 무방하지만(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48 판결), 그 공포심과 매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귀하를 협박한 甲에게 귀하의 외동아들들을 상해하겠다고 강박하여 귀하로 하여금 위 농지를 매도하게 한 행위는 형사상 협박죄 등으로 성립될 수도 있음은 별문으로 하고, 민사상으로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매도행위의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전·기·상·식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사람이 잠든 되었을때 나타나는 생리작용은 전류의 크기, 통전경로, 통전 시간 등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Q 감전시 응급조치

A 감전당한 환자의 응급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사장 등에서 부주의로 감전을 당했을 경우에는 감전정도에 따라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전으로 의식 불명인 경우는 감전사고를 발견한 사람이 즉시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시행하여 우선 환자가 의식을 되찾게 한 다음 의식을 회복하면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합니다. 감전으로 인한 화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일반 화상과 마찬가지로 화상치료를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Q 감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A 감전이란 무엇이며 감전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인체에 전류가 흐르면 극히 미약한 전류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으나 통과 전류를 조금씩 증가시키면 짜릿짜릿한 느낌이 들고 좀 더 증가시키면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기적 충격(전격)을 느

끼게 되거나 상처를 입는 현상을 "감전"이라 합니다.

인체에 전류가 흘러 "전류의 크기×흐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전류의 열작용으로 전기의 유입구와 유출구에 화상을 입게 되고 신체 내의 세포를 파괴하거나 혈구를 변질시키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류의 자극에 의한 근육수축으로 호흡작용의 정지 또는 질식사 하거나 심장 정지 등으로 심실세동을 일으켜 체내의 혈액순환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고령화시대-노인의성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 및 평균수명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7.2%를 넘어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생산인구의 감소와 소비수요의 격감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성장률은 둔화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2004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고령사회의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 소득보장, 산업교육 및 문화영역 등을 포함하는 고령화와 관련된 모든 법령의 모범인 고령사회대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였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한 고령화 충격을 극복해 나가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준비 시간도 없이 급격하게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며, 우리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OECD국가들은 인구 고령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사회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대에 따른 거동 불편 노인인 대한 개인, 가족 및 국가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우리사회의 인구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초유의 속도로 진행되어 급격한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에 덧붙여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진단검사의학과장 민도식



에서만 발생했다. 다행히도 이번 충북 음성 등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양계장 종사자들이 잠복기가 훨씬 지났는데도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하다.

원래 조류독감바이러스는 고기자체나 알에는 전혀 없고 분변이나 분비물에만 존재한다. 또한 열에 매우 약해서 섭씨 70도에서 30분, 75도에서 5분, 80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죽는다. 100도로 끓일 경우 즉시 사멸하므로 닭 모래집이건 살코기건 익혀서 먹으면 안전하다. 지금까지 닭이나 오리고기를 먹고 사람이 조류독감에 걸렸다는 보고는 전 세계적으로 한 건도 없다. 조류독감에 걸린 닭은 아예 산란을 하지 못하므로 낳달걀을 먹어도 전혀 문제없으니 갑작스런 전염병으로 실외에 빠진 양계업자를 직접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이유 없이 닭고기, 오리고기를 밥 달걀을 회피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포천병원(031-539-9114)

조류독감과 닭고기

원래 조류독감바이러스는 고기자체나 알에는 없고 분변이나 분비물에만 존재한다.

조류독감이란 닭, 오리, 칠면조나 야생조류 등의 가금류에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유행성 독감이 있듯 늘 자연계에 존재해왔다. 단지 올해는 맹독성이 강한(고병원성) 유형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급습한 것

뿐이다. 국내에는 약병원성 조류독감이 1996년 처음 발생했고 그동안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발생한 바가 없었다.

요즘은 TV화면에 양계장의 닭들이 집단 폐사 당하고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해 명숙으로 매립시키는 장면을 볼 때마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절로 없어지지만 알고 보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지난 1997년 홍콩 2003년 2월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사람에게도 전염 됐는데 이들 경우에는 양계종사자, 수의사, 방역요원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과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건설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건설용역 제공은 계약조건에 따라 형태는 여러 가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중간지급조건·장기할부조건·기타 조건부로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여기에서 중간지급조건이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대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기타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거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질문의 경우 완성도지급조건이나 중간지급조건 등과 같이 계약사항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한 유사 예규회신이 있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경우 공급시기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세무사 박운중 031-872-6116

대형 할인점 입점에 대한 성명서

대형할인점 입점으로 인해 포천시 경제에 끼치는 영향 및 지역상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권 및 지역경제발전 등을 외면한 포천시청의 대형할인점 인가처분은 당장 설계가 힘든 지역상인들과 농민, 중소기업체 모두에게 생활고의 압박은 물론 생활에 대한 위협을 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다산 사상을 실천하는 경제인 연합”은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 연합회, 중소기업 연합회, 농·축산 연합회, 학계 전문가, 농업인, 경제인,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한 시민들과 연계하여 대형할인점의 인가처분에 관한 포천시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민들과 각 단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는다.

또한 대형할인점 인가처분과 관련하여 아래 4개항에 대한 포천시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포천시청은 소흘읍 송우리 지역의 삼성 홈플러스와 선단동 지역에 들어서는 이마트의 인가처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지역 중소기업 상인들의 생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이는 지역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라는 대형할인점은 외국기업의 계열사임을 뺀히 아는 사실이다. 또한 이마트는 전국 곳곳에서 민, 관, 학 기업이 합동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입점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업체이다.

셋째, 부실한 교통영향평가다.

교통영향평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넷째, 재래시장과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육성특별법이 그 실효성의 의문이다.

· 다산연 사무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388-1 · 전 화 : 031-543-5073 · 이메일 : hongwoo54@hanmail.net

다산 사상을 실천하는 경제인 연합 위원장 이 홍 우